

Global Market Report

20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부가가치세 도입

-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부가가치세(VAT) 도입 배경과 영향 / 2

- 2 | 1. 최근 경제동향
- 5 | 2.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 경과 및 영향

II.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 8

- 9 | 1. 사우디아라비아
- 16 | 2. 아랍에미리트

III. 부가가치세 FAQ · 우리기업 Q&A / 24

- 24 | 1. 사우디아라비아
- 42 | 2. 아랍에미리트

#. 참고자료 / 52

- 52 | 1. 주요 산업별, 항목별 부가세율
- 56 | 2. 주요 관련기관 정보

요 약

□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과 영향

○ 도입 배경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 재정수지 악화로 신규 재정수입원 모색
- 의료, 교통, 교육 등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 대응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자원 마련

○ 도입 경과 : GCC 통일협약 체결(2017.4) → 회원국별 부가세 기본법 제정(2017.7) → 회원국별 부가세 시행령 제정(사우디 2017.8, UAE 2017.11)

○ 영향

- (정부 세수) 부가세 도입으로 GDP의 1.6%*정도에 달하는 수입 증가 예상
* 사우디 : 102억달러, UAE: 56억달러(2016년 명목 GDP 기준)
- (소비심리) 부가세를 자체는 저율이나 신규 세금 부과 자체가 소비 심리에 영향 전망
- (물가) 도입 첫해에 물가상승 압력이 가장 크고, 0.5~1%p 정도 상승 예상
- (산업별) 계약금액이 큰 프로젝트 분야에 영향이 전망되며, 면세분류를 기대했던 식료품과 귀금속 분야가 일반과세로 분류되어 타격이 예상됨.
- (시기별) 소비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 영향을 받다가 장기적으로 안정화 예상, 공급은 도입 초기 준비 비용이 발생하며 시장별 경쟁도에 따라 장기 세금 부담비율 결정 예상

□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 근거법 및 주무기관

	사우디	UAE
근거법	i) GCC 통일협약 ii) VAT 기본법 iii) VAT 시행령	i) GCC 통일협약 ii) VAT 기본법 iii) VAT 시행령 + iv) 조세절차법, v) 벌과금 규정
주무기관	사우디국세청(GAZT)	UAE연방세무국(Federal Tax Authority)

○ 과세 구분별 내역

구분	세부 항목 (UAE 및 사우디 공통항목)
면세	일부 금융 서비스, (이윤기반 금융서비스, 요금기반 금융서비스는 과세), 거주용 건물 임대, 국내 여객운송
영세	GCC 역외로의 수출, 국제수송 및 관련 공급, 해상, 항공, 육상 교통수단의 공급(항공기 및 선박) 투자목적의 귀금속(99% 이상의 순도) 수입

구분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세 일반세율 적용하여 과세	0% 세율로 과세	과세되지 않음
매입 부가가치세액 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 우리 진출기업 주요 Q&A

- 영업지사의 VAT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 실제 기능을 고려하여 영업지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총공급액이 등록기준 금액에 해당한다면 VAT 사업자등록 요망
-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 사업관련 비용만 공제되며, 접대비 등은 제외
- 프리존 소재 기업 : 프리존 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일 경우 및 용역의 공급일 경우 일반과세 대상임.

I

부가가치세(VAT) 도입 배경과 영향

1. 최근 경제동향

□ 유가 동향

- OPEC 회원국들의 높은 감산 이행률, 글로벌 수요 회복세,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유가 상승세 지속

< 2017년 월별 유가 동향 >

(단위 : USD/b)



자료원 : Petronet

- 2017년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OPEC 정례회의에서 감산 기간을 2018년 12월까지 9개월 추가 연장기로 함에 따라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참여국 : OPEC 14개국, 비OPEC 산유국 10개국(러시아 등)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감산 연장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와 브렌트유의 내년 가격 전망치를 각각 종전 55달러, 58달러에서 57.50달러, 62달러로 상향 조정함.

□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성장률

-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6월 유가 하락 전까지 고유가의 혜택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
-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은 저유가와 세계 경기둔화로 지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5.04%(2011-2015)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
- 2016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OPEC 감산합의, 유가 불확실성 및 석유의존도를 낮추려는 경제개혁에 기인함.
- 2017년 비석유부문 성장률 전망은 1.7%로 비석유 부문 성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됨.
- 2018년 경제성장률은 1.3%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00-2014 평균	2015	2016	2017 ^{P1)}	2018 ^P
성장률	4.1%	4.1%	1.7%	0.1%	1.1%
- 비석유부문	6.7%	3.2%	0.2%	1.7%	1.3%
- 석유부문	1.3%	5.3%	3.8%	-1.9%	-0.9%
명목 GDP(억USD)	6,444	6,543	6,464	6,785	7,085
원유생산(만배럴/일)	910	1,020	1,050	1,000	1,010
원유수출(만배럴/일)	-	830	900	860	870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3.5%	2.2%	3.5%	-0.2%	5.0%
재정수지(GDP대비)	3.9%	-15.8%	-17.2%	-8.6%	-7.2%
경상수지(GDP대비)	15.2%	-8.7%	-4.3%	0.6%	0.4%
공적대외준비자산*(억USD)	-	608.9	528.6	472.6	442.0

자료원 : IMF Country Report(2017.10)

○ 정부 재정수지

-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최대 적자 기록 후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2016년 적자폭을 줄인데 이어 2017년에도 예상치(528억 달러)보다 적은 재정 적자(2017년 3분기기준 32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1) IMF 추정치

□ 아랍에미리트

○ 경제성장률

- IMF²⁾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비석유부문 성장률은 올해 3.3%, 내년 3.4%, 석유부문 성장률은 올해 -2.9%, 내년 3.2%로 전망됨.
- 석유부문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OPEC 주도 감산 합의로 원유 생산을 감소시킨 데 따른 결과임.
- 비석유부문 성장률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성장에 부담이 되었던 재정건전화 조치³⁾의 추진 속도가 2016년 이래 늦추어졌고 EXPO 2020을 앞두고 인프라 등 공공투자가 증가했기 때문

○ 정부 재정수지

- IMF에 따르면 그간 저유가로 악화일로에 있던 UAE 정부재정 수지도 올해 작년대비 0.4p 정도 회복된 -3.7%, 내년도에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UAE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00-2013 평균	2014	2015	2016	2017 ^{P4)}	2018 ^P
성장률	4.9%	3.3%	3.8%	3.0%	1.3%	3.4%
- 비석유부문	6.4%	4.6%	3.2%	2.7%	3.3%	3.4%
- 석유부문	2.6%	0.4%	5.4%	3.8%	-2.9%	3.2%
명목 GDP(억USD)	2,303	4,032	3,579	3,487	3,787	4,009
원유생산(만배럴/일)	240	279	288	303	288	299
원유수출(만배럴/일)	223	255	244	244	243	262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4.2%	2.3%	4.1%	1.8%	2.1%	2.9%
재정수지(GDP대비)	7.7%	1.9%	-3.4%	-4.1%	-3.7%	-2.2%
균형재정 달성 국제유가 (USD/배럴)	43.3	91.0	64.7	60.7	68.0	61.7
경상수지(GDP대비)	10.3%	13.3%	4.7%	2.4%	2.1%	2.1%
공적대외준비자산*(억USD)	326	785	940	854	785	745

자료원 : IMF 지역경제전망(2017.10), * 공적대외준비자산에 국부펀드의 해외자산은 제외

2) IMF 지역경제전망(Middle East and Central Asia), 2017년 10월 발간

3) 전기 및 수도세 인상, 연료보조금 감축, 정부관련기관(GRE) 대상 자본이전 축소, 각종 요금(주차, 교통범칙금 등) 인상 등 추진

4) IMF 추정치

2.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 경과 및 영향

□ 도입 배경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 필요
 - IMF는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GCC 국가들에게 2001년부터 신규 세금 도입을 통한 세원 다변화를 권고해 왔으며, GCC 국가들도 2012년부터 관련 논의를 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 하지만 저유가 지속으로 GCC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2017년 전격적으로 부가세 도입에 합의

< GCC 산유국 재정적자 발생 요인 >

1. 고유가 시기 지출 규모 증가

- UAE : '00-'14년 고유가와 석유생산 증가로 총수입 11% 증가, 총지출도 10% 증가

2. 유가 하락에 비해 더딘 재정건전화 노력

- 사우디 : 일례로 '15년초 국왕 즉위시 공무원대상 2개월분 급여 상당의 보너스 지급 등의 영향으로, '15년의 재정적자가 GDP대비 15%를 기록

3. 재정건전화 조치*를 통한 지출감소가 석유수입 감소분에 비해 미흡

- * 사우디 : '16년 재정지출합리국 신설, 대형 프로젝트 중단 및 연기, 공무원 급여 삭감, 건설 프로젝트 대금 미지급과 국내외 채권 발행 등 시행
- * UAE : 전기 및 수도세 인상, 각종 요금 인상(두바이 호텔 및 공항 주차비용 인상, 아부다비 호텔 숙박 및 외국인 임대료 관련 지방자치 요금 부과 등)

○ 공공 서비스 공급 비용 조달 및 서비스 개선

- 사우디와 UAE는 왕정국가로 각종 대국민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석유수입을 재분배하고 정정을 안정시켜 왔음.
- UAE는 신규 세수로 병원, 도로, 공교육, 공원, 폐기물처리, 경찰력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동시에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활용 예정

○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사우디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Neom 프로젝트, 홍해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신규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도입 경과

○ GCC 통일협약 체결

- GCC 통일협약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내 법령 도입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VAT를 시행토록 함.

< GCC 국가들과 부가가치세 도입 일정,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 >

- GCC 국가들과 경제협력협약(the Economic Agreement of the GCC states) 체결,
- GCC 관세동맹(The GCC customs Union) 체결 및 공동대외관세 적용 중,
- 새로운 공공정책을 구상하고 도입하는데 협력 필요

< UAE 부가세 관련법령 도입 경과 >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선도입(2018.1~)

- 국내 법령 입안이 마무리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도입
- 바레인, 오만은 2019년 1월1일부로 도입이 예상되며, 쿠웨이트와 현재 GCC 국가들과 단교중인 카타르는 도입 지연이 예상됨.

□ 의의 및 영향

○ 정부 세수예의 영향

- IMF는 사우디가 부가세 도입으로 GDP의 1.6%(2016년 명목GDP 기준 103억 달러 상당)의 수입 확보를 예상
- UAE는 부가세 도입으로 GDP의 1~1.6%⁵⁾(2016년 명목GDP 기준 56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수입 확보 예상
- IMF는 부가세 도입으로 비석유부문 GDP⁶⁾의 2.7%에 달하는 수입 증가 예상(2015.8월 IMF Country Report 기준)

5) 자료원에 따라 예측치가 약간 상이함. UAE 경제부는 GDP의 1%, 아부다비 상업은행(ADCB)은 1.5~1.6%의 세수증가 예상

6) 2014년 기준 비석유부문의 명목 GDP기여도는 약65.7%(IMF Economic Diversification in Oil-Exporting Arab Countries(2016.4))

o 소비심리 및 물가에의 영향

- 신규 부가세율은 낮은 수준⁷⁾이지만 양국 모두 개인소득세가 없고, 법인세도 제한적⁸⁾이라 신규 세금 부과 자체가 내구소비재 및 건설기자재 등 수요에 영향을 미쳐, 2분기 정도의 적응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계 컨설팅사인 Faithful+Gould에 따르면 부가세 시행시 사우디 물가상승율이 0.5~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IMF에 따르면 UAE의 2018년 평균 CPI 인플레이션율은 2017년보다 0.7%p 높은 2.9%로 예측되지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도입 첫해에 가장 크게 나타난 후 감소할 전망

o 산업별 영향

- 산업별로 일반과세, 영세, 면세 현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됨.
- 프로젝트 분야는 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도입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용 부동산 및 고가의 소매품목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면세가 예상되었던 식료품과 교역량이 많은 귀금속 분야가 일반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타격이 예상됨.
- VAT 부과로 석유제품 국내소비 감소시 석유 수출량 증가 및 석유 시장에서의 지위 공고화 예상
- UAE와 달리 사우디는 사교육 전체가 VAT 일반과세 대상으로 관련 투자에 영향이 예상됨.

o 시기별 영향

- (단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자도 회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됨.
- (장기) 소비 패턴이 단기보다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시장의 경쟁도에 따라 가격 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여짐.

7) 전세계 부가가치세율은 5%~25% 사이에 분포, 평균세율 12%임.

(주요국 부가세율('16.12월 기준) : 안도라(Andorra) 4.5%, 대만(Taiwan) 5%, 영국 20%, 한국 10%)

8) <UAE> 석유가스산업 관련기업(두바이50%, 아부다비 55%) 및 외국은행지점(20%) / <사우디> 외국인 출자법인(20%)에만 과세

II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o 기본 개념

-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indirect tax)로서 일반 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의 일종
- 재화와 용역(goods and services)을 대상으로 부과됨.
-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한국을 비롯 세계 150여개 국가가 도입
- ‘공급망(supply chain)’의 각 단계에 부과됨. 최종 담세자는 소비자이며, 기업은 세금을 거두고 지출장부를 작성 즉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수행함

< 부가세(Value Added Tax) 적용 예시 >

(단위 : 원)

사업자	거래 개요	매출	매출VAT (A)	매입	매입VAT (B)	VAT 납부액 (C) = (A) - (B)
밀 생산업자	밀을 100원에 공급 (부가가치 100)	100	5	0	0	5
밀가루 생산업자	밀을 밀가루로 가공하여 300원에 판매 (부가가치 : 300-100 = 200)	300	15	100	5	10
밀가루 유통업자	공급받은 밀가루를 600원에 판매 (부가가치 : 600-300 = 300)	600	30	300	15	15
제과점	밀가루를 가공하여 빵을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 (부가가치 : 1,000-600=400)	1000	50	600	30	20

상기 예시에서 볼 수 있듯 각 단계별 사업자는 단계별로 창출해 낸 부가가치의 5% 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며(예 : 밀가루 유통업자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 300 x 부가가치세율 5% = 15), 해당 부가가치세 총액 50원은 빵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

상기 예시에서 볼 수 있듯 부가가치세 도입시 소비자는 기존에 1,000원에 구입 하던 빵을 기존 가격 1,000원에 부가가치세 50원을 더한 금액인 1,050원을 지불 하고 구매하게 됨.

1 사우디아라비아

□ 근거 법령

구분	법령명	채택시기
GCC 통일협약	Unified VAT Agreement for the GCC	'17.4월
VAT 기본법	Vat Law	'17.7월
VAT 시행령	Vat Implementing Regulations	'17.8월

* GCC 각국은 Framework에 기초하여 국가별 부가가치세 법안을 작성토록 함.

□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의 구성

- GCC 부가가치세 통일협약(Unified VAT Agreement for GCC)
 - － 전체 15장 78조로 구성
- 사우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law)
 - － 전체 18장 53조로 구성
- 사우디 부가가치세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
 - － 전체 12장 79조로 구성

<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 전문 구조 >

서 문

제 1 장 정의

제 2 장 부가세 등록

제3조 ~ 5조 : 과세자의 정의 및 등록관련 사항

제 3 장 재화와 용역 공급

제6조 ~ 12조 : 재화와 용역의 공급관련 사항

제 4 장 공급 장소

제 13조 ~ 14조 :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장소관련 사항

제 5 장 과세액

제 15조 : 수입품에 대한 과세

제 6 장 수입품

제 16조 ~ 17조 : 수입품관련 부가세 부과

제 7 장 부가가치세 계산

제 18조 ~ 21조 : 부가가치세율 및 적용관련 사항

제 8 장 부가가치세 공제

제 22조 :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범위
제 9 장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제 23조 :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발행, 신청, 절차
제 10 장 부가가치세 환급
제 24조 ~ 26조 : 부가가치세 신청 및 환급관련 사항
제 11 장 부가가치세 납부
제 27조 ~ 30조 : 부가가치세 납부관련 사항
제 12 장 부가가치세 환급
제 31조 ~ 34조 :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절차관련 사항
제 13 장 정보 기밀 및 교환
제 35조 : 과세관련 정보 기밀 유지
제 14 장 서류 보관 및 합동 책임
제 36조 ~ 37조 : 부가세관련 서류 및 장부 보관관련 사항
제 15 장 조사 및 감독
제 38조 : 자카트청의 조사 및 감독
제 16 장 부가가치세 회피 및 벌칙
제 39조 ~ 47조 : 탈세 및 벌칙
제 17 장 부가가치세 벌칙과 위반 검토
제 48조 ~ 49조 : 탈세 및 벌칙
제 18 장 부가가치세 종료 조항
제 50조 ~ 53조 : 시행령 발표 및 자카트청 등록

<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문 구조 >

서 문
제 1 장 정의
제 2 장 과세자
제 3 장 재화와 용역의 공급품
제 4 장 공급관련 장소
제 5 장 면세
제 6 장 영세
제 7 장 과세품의 금액
제 8 장 수입품
제 9 장 과세액의 계산
제 10 장 절차와 감독
제 11 장 부가가치세 환급
제 12 장 일반조항

자료원 : <https://www.vat.gov.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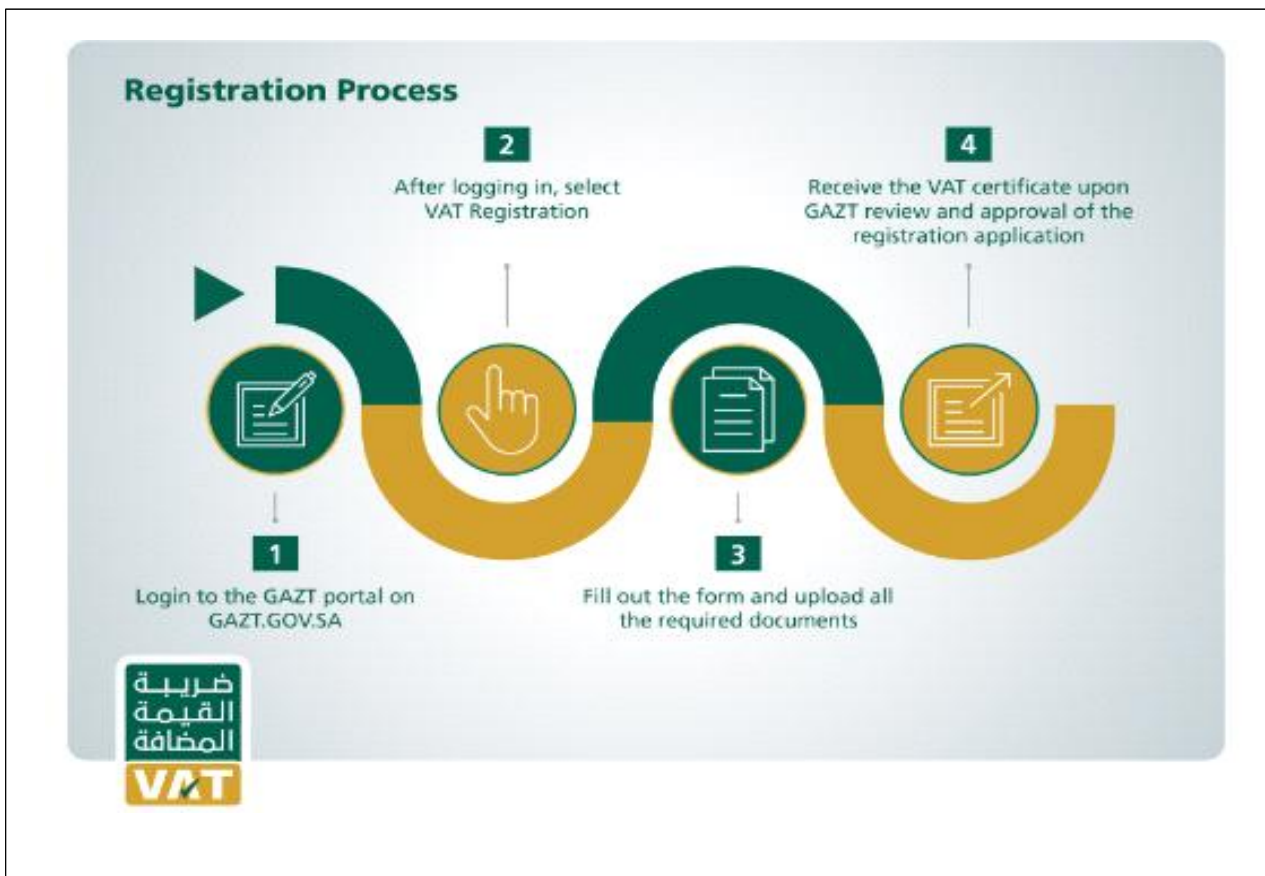
* 법령 전문은 상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해당 기업 등록 방법

- 사우디국세청(GAZT) 홈페이지 접속(www.gazt.gov.sa), User login 클릭
-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입력
- 일회용 login 코드 입력 (GAZT 등록 휴대폰으로 코드 발송)
- GAZT taxpayer's Dashboard 오픈
- 부가가치세 과세자 등록
- 만약 사우디 국세청의 기존 과세코드(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없는 경우, 사우디국세청에서 과세코드를 발급 받고 부가가치세 과세자 등록

< 부가가치세 등록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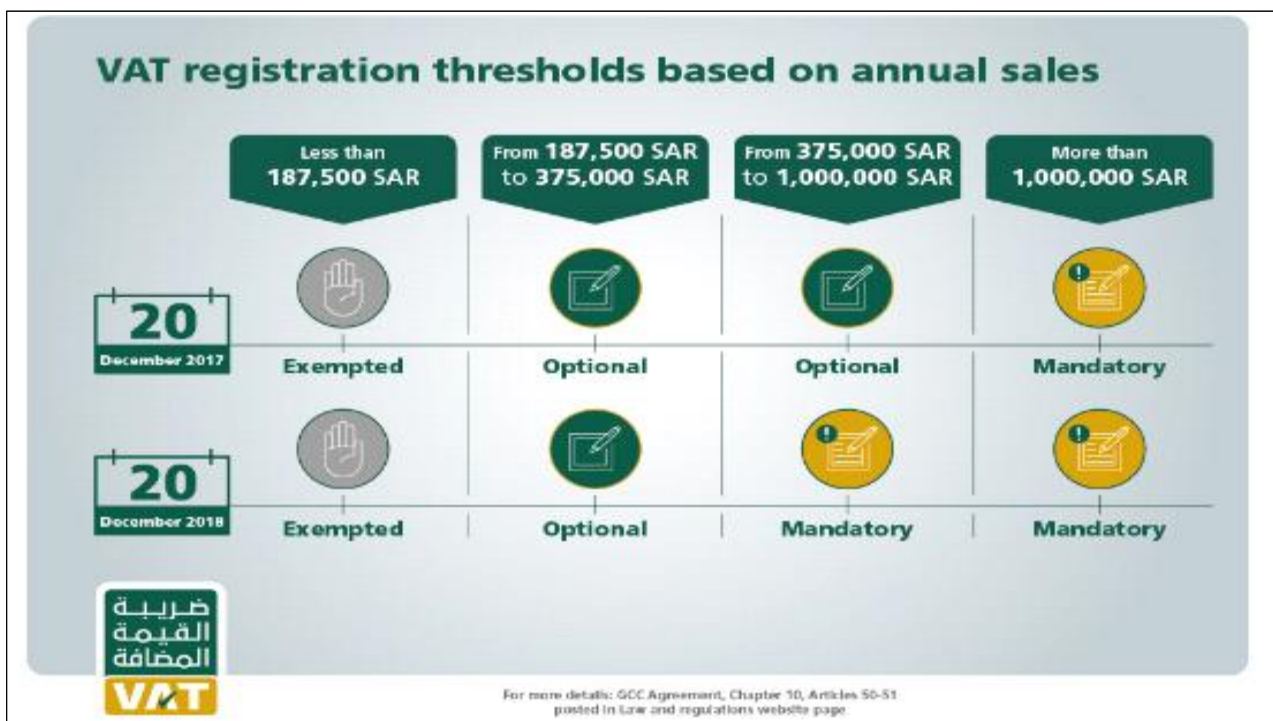


자료원 : www.gazt.gov.sa

o 부가가치세 등록 기업의 기준

- 부가가치세 등록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나 향후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등록, 자발등록, 면제기업으로 분류됨
- 연간매출액(또는 예상 매출액)이 187,500리알(USD50,000상당)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등록 면제
- 연간매출액(또는 예상 매출액)이 375,000리알(USD100,000상당)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의무등록이나 2018.12.31일까지 등록 유예
- 연간매출액(또는 예상 매출액)이 1백만 리알 이상이면 2017.12.20일까지 의무등록
- 연간매출액(또는 예상 매출액)이 375,000 리알 이상이면 2018.12.20일까지 의무등록

< 부가가치세 등록 기업의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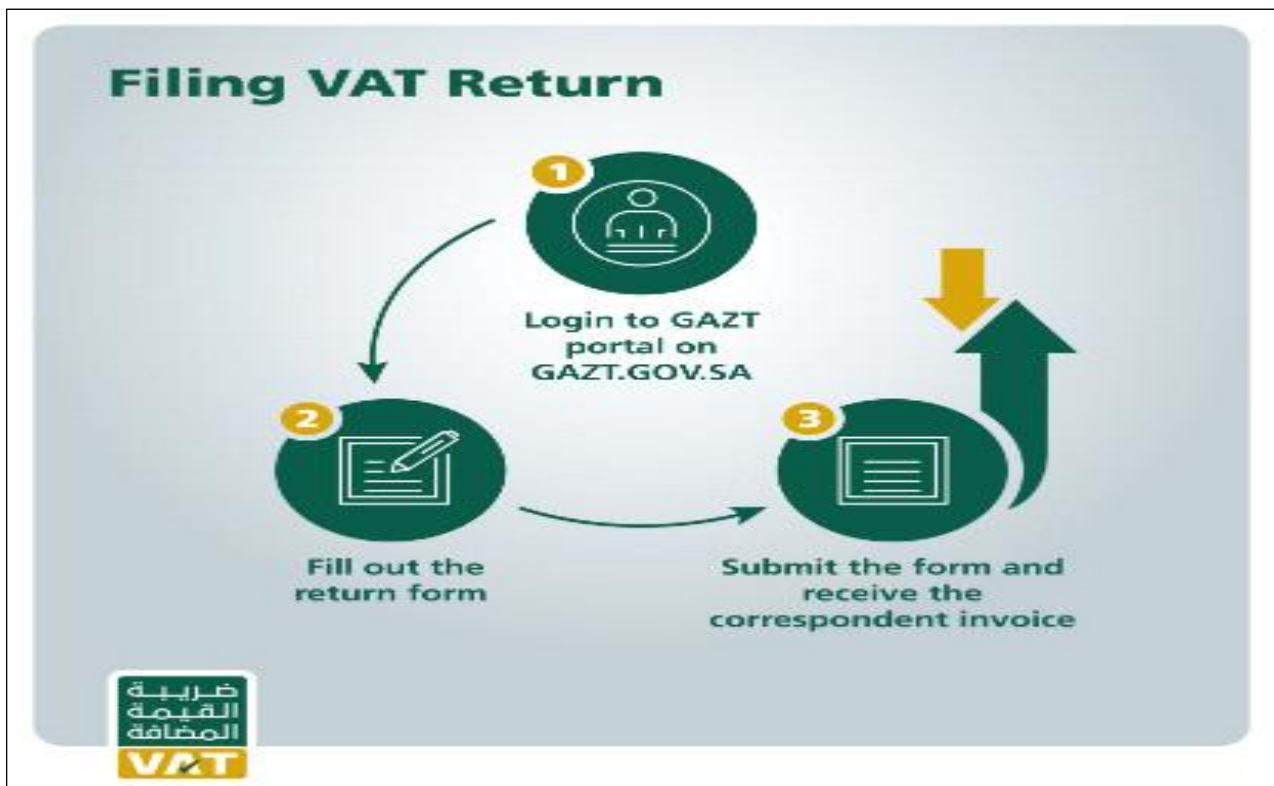
자료원 : www.gazt.gov.sa

o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사우디국세청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품 구매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함.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시기는 매출액이 40백만 리얄(USD1.07백만 상당) 이상인 기업은 매월 신청하며 매출액이 40백만 리얄 이하이면 분기별 신청함.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기한은 신청 주기가 월 기준인 기업은 다음 달 내에, 신청 주기가 분기인 기업은 분기 종료 다음 달까지 신청요망

< 부가가치세 신청 절차 >



자료원 : www.gazt.gov.sa

- 부가가치세 신청 양식에 포함될 내용
 - 일반과세대상 국내 판매
 - 다른 GCC 회원국 내 VAT 등록 고객에 대한 판매
 - 영세대상 국내 판매
 - 영세대상 수출
 - 면세 판매
 - 일반과세대상 국내 구매
 - 세관에서 VAT 납부 대상인 수입
 - 매입자과세를 통해 VAT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
 - 영세대상 구매
 - 면세대상 구매
 - 이전 과세주기 관련 수정(최대 5,000 리얄)

< 부가가치세 환급 양식 >

VAT Return Form

VAT on Sales

- 1- Standard rated sales
- 2- Sales to customers in VAT implementing GCC countries
- 3- Zero rated domestic sales
- 4- Exports
- 5- Exempt sales
- 6- Total Sales

VAT on Purchases

- 7- Standard rated domestic purchases
- 8- Imports subject to VAT paid at customs
- 9- Imports subject to VAT accounted for through reverse charge mechanism
- 10- Zero rated purchases
- 11- Exempt purchases
- 12- Total purchases

Example Calculations:

- Sales:** During March the business sold 100 products for 5000 SAR. VAT Amount (SAR) = 250. The business collects 250 SAR of VAT on its sales. $5\% \times 5000 = 250$.
- Purchases:** The business buys material from local supplier for 2000 SAR. VAT Amount (SAR) = 100. The business pays 100 SAR of VAT on its purchases. $5\% \times 2000 = 100$.

Summary:

- 13- Total VAT due for current period: 150
- 14- Corrections from previous period (between SAR $\pm 5,000$): -
- 15- VAT credit carried forward from previous period(s): -
- Net VAT due (or claim): 150

VAT Logo: ضريبة القيمة المضافة VAT

자료원 : www.gazt.gpv.sa

o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양식 및 내용

- 부가세 인보이스 양식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는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양식에 포함될 내용
 - 발행일
 -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 공급자의 세금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명기한 증명서와 공급받는 자의 세금등록번호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름과 주소
 - 공급 재화의 수량, 성격 혹은 공급 서비스의 범위와 성격
 -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다를 경우)
 - 단위당 과세가격, VAT를 제외한 단위가격, 할인 내역(단위가격에 불포함시)
 - 적용세율
 - 총 과세액(사우디 리얄로 표시)
 - 일반과세율 비적용시 적용 세율 관련 설명

o 부가가치세법률관련 주요 벌금 내역

항목	벌금내역
부가세 등록 미준수	10,000리알
부가세 환급 제출 미준수	미지불 부가세액의 5~25%
부가세 지불 미준수	매달 미지불 부가세액의 5%
미등록자로서 부가세 인보이스 발행	100,000리알 내 외
부가세 인보이스, 장부, 기록 및 회계 서류 보관 미준수	50,000리알 내 외
거짓, 위조, 가공의 서류, 신고서, 기록 및 정보의 제품	지불 부가세액의 100%이하
부가세 납부없이 사우디 국외로 재화를 반출 및 반입	회피 대상의 재화 및 서비스 가액의 3배 미만
사우디국세청(GAZT) 공무원의 공무수행 방해	50,000리알 내 외

자료원 : 사우디국세청(GAZT)

주) 환율 1US\$=3.75리알

* 주요 산업 항목별 세율 : 첨부 참조

2 아랍에미리트

□ 근거 법령

구분	법령명	채택시기
GCC 통일협약	Unified VAT Agreement for the GCC	'17.4월
조세 절차법	Federal Law No.(7) of 2017 on Tax Procedures	'17.6월
VAT 기본법	Federal Decree-Law No.(8) of 2017 on VAT	'17.7월
벌과금 규정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ax Laws in the UAE	'17.10월
VAT 시행령	Executive Regulations of the Federal Decree-Law No.(8) of 2017 on VAT	'17.11월

* GCC 각국은 Framework에 기초하여 국가별 부가가치세 법안을 작성토록 함.

< UAE 부가가치세법 전문 구조 >

서 문
제 1 부 정의
제 2 부 세금의 범위 및 세율
제 3 부 공급
제1장 : 재화와 용역의 공급
제2장 : 공급으로 간주되는 것
제 4 부 등록과 말소
제 5 부 공급과 관련된 규칙
제1장 : 공급 시점
제2장 : 공급지
제3장 : 거소지
제4장 : 공급가액
제5장 : 이윤
제 6 부 영세 및 면세
제1장 : 영세
제2장 : 면세
제3장 : 단일 혹은 혼합 공급
제4장 : 세금 신고 관련 특별 의무
제5장 : 지정 구역
제 7 부 과세액의 계산
제1장 : 과세기간별 세액
제2장 : 매입세액의 배분과 조정
제3장 : 자본금 관련 규칙
제4장 : 공급시점 이후 세금 조정
제5장 : 세금계산서
제6장 : 세금 공제 증서
제 8 부 과세기간, 소득신고, 세금의 납부와 환급
제1장 : 과세기간
제2장 : 소득신고와 세금의 납부
제3장 : 환급가능세액 초과분의 이월과 세금 환급
제4장 : 세금환급 관련 기타 조항
제 9 부 위반과 벌금
제 10 부 일반조항
제 11 부 종료조항

< UAE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문 구조 >

서 문
제 1 부 정의
제 2 부 공급
제 3 부 등록
제 4 부 공급관련 규정
제 5 부 이윤
제 6 부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
제 7 부 면세 대상 공급
제 8 부 특정 공급에 대한 세금 신고
제 9 부 지정 구역
제 10 부 과세액의 계산
제 11 부 매입세액의 배분
제 12 부 자본금 관련 규칙
제 13 부 세금청구서와 세금 공제 증서
제 14 부 소득 신고와 과세 기간
제 15 부 초과 과세액의 환급
제 16 부 환급관련 기타 규정
제 17 부 경과규정
제 18 부 종료규정

자료원 : <https://www.mof.gov.ae/En/lawsAndPolitics/govLaws/Pages/default.aspx>

* 법령 전문은 상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도입 시기 및 세율

- 2018년 1월 1일부로 5% 단일 세율 부가가치세를 부과 예정

□ 과세대상과 과세자

○ 과세대상(Taxable Supplies and Taxable Imports)

- UAE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UAE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자(Taxable Person)

-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UAE 거주자로, 연간 공급 재화 및 용역의 가치가 의무 등록 기준을 넘거나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 공급시점

구분		내용
재 화	기본	i. 재 화 인 도 일 - (운송수단을 통해 공급된 경우) 재 화가 이동한 시점, - (운송수단을 통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재 화가 구매자에 도달한 시점 ii. 재 화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 iii. 재 화의 조립·설치 완료일 iv. 관세법에 따른 수입일
	예 외	VAT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본 과세시점보다 빠를 때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용역	기본	용역 공급이 완료된 때
	예 외	대금 수령, VAT 세금계산서상 대금지불기한, VAT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공급장소(아랍에미리트 내 혹은 외에서 이루어졌는지 결정하는 기준)

구분		내용
재 화	기본	공급이 일어난 지점
	예 외	국경간 공급, 부동산, 수도 및 에너지(공급자 소재지)
용역	기본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예 외	국경간 공급,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사용장소)

□ VAT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 등록 기준

의무 등록 대상	공급 및 수입액이 AED375,000(USD100,000 상당)
임의 등록 대상*	공급 및 수입액이 AED187,500(USD50,000상당)이상 375,000미만일 경우
해당 없음	공급 및 수입액이 AED187,500 미만일 경우

*아직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의 등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건

○ 기준액의 계산

- 과세자가 해당월 및 지난 11개월간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총액
혹은 과세자가 향후 30일간 공급할 재화와 용역의 총액
- 면세대상 공급은 연간 공급액을 계산할 때 고려치 않음.
- 납세지에 설립되지 않은 과세자(비거주자 등)에게는 기준액이 적용되지 않으나, VAT 등록은 요구될 수 있음.

○ 등록 절차 : UAE 과세당국(www.tax.gov.ae) 온라인 등록 (eservices.tax.gov.ae/en-us)사이트를 통해 등록

< 등록기한 >

구분	기한
연매출 1억5천만AED 이상	2017.10.31
연매출 1천만AED 이상	2017.11.30
그 외	2017.12.4

< 등록절차 예시 >

① e-Service 계정 신청

Sign up
Welcome to the Federal Tax Authority

Email address:

Name:

Select country code: Mobile Phone Number:

Select country code: Office Phone Number:

Password must be 8-20 characters long with at least one numeric, one alphabet and one special character such as @, #, %, & *
Password: Password strength:

Confirm password:

Enter security code: 749483

Select security question:

Answer:

Hint:

Please choose the purpose for registration:
Business registering for Tax:

☐ I agree to the Terms & Conditions of the FTA

Sign up
Already registered? sign here

② VAT 등록

الهئية الاتحادية للضرائب
FEDERAL TAX AUTHORITY

DASHBOARD MY PROFILE DOWNLOADS MY PAYMENTS EXCISE TAX RETURNS AND DECLARATIONS EXCISE GOODS LIST

VAT

TAX VAT101 Register for VAT

Excise Tax

TAX EX101 Register for Excise Tax

Warehouse Keeper and Designated Zones

TAX EX102 New Warehouse Keeper



VAT 세부 등록 절차

□ 영세 및 면세 대상 공급

< VAT 과세 구분별 세부내역 >

구분	세부항목
면세	일부 금융 서비스, (이윤기반 금융서비스, 요금기반 금융서비스는 과세), 거주용 건물 공급(영세 대상 제외), 국내 여객운송, 나대지의 공급,
과세	영세 GCC 역외로의 수출, 국제수송 및 관련 공급, 해상, 항공, 육상 교통수단의 공급(항공기 및 선박) 투자목적의 귀금속(99% 이상의 순도) 수입, 거주목적의 건물 공급(준공 후 최초 3년간, 거주용으로 전환 후 최초 3년), 원유 및 천연가스의 공급, 치료 목적(필수 및 예방)의 의료 서비스 및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일정한 교육 서비스 및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일반과세(5%) 그 외

- (면세) 소비자에게 매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공급자는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다소 불리함.
- (영세) 최종소비자에게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공급자는 지급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부가세 완전 면제에 가까움. 단,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

< 제도별 차이 >

구분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세 일반세율 적용하여 과세	0% 세율로 과세	과세되지 않음
매입 부가가치세액 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 주요 산업 항목별 세율 : 첨부 참조

□ VAT 세금계산서의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 매입세액 공제 신청시 필요
- VAT 법상 발행, 수취 및 보관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

○ 세금계산서 내용

- 세금계산서임을 명시
-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번호
- 공급받는 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번호
-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재화의 공급일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다를 경우)
-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 공급단위, 단위당 가격 및 수량
- 할인 내역
- 총 공급가액(AED)
- 총 과세액(AED 및 필요시 적용환율)
- 공급받는 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이를 명시

□ 매입세액 공제·환급

- 공제가능 대상 : 사업관련 발생 매입세액
 - － 공제 신청을 하는 법인이 과제가능 주체
 - － VAT가 정당하게 부과
 - － VAT가 납세되었다는 서류(유효한 세금 청구서) 보유
 - － 취득한 상품과 서비스가 과세대상 공급을 위해 사용되거나 의도 되어야 함.
 - － VAT 매입세액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향후 납부할 VAT 세액 또는 다른 세목과의 상계가 원칙이며, 상제한 후에 법정 기간이 경과하였 음에도 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조세절차법 규정에 따른 환급 가능
- 공제 제외 대상
 - － 과세대상이 아닌 공급에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제외
 - － 접대비·유홍비 관련 비용은 공제 제외
 - － 10명 미만 차량 관련 발생 비용 공제 제외
 - － 종업원 등에게 발생한 회의비 중 법률이나 사규에 정해지지 않은 것

□ VAT 환급 : 신청과 지급

- 신청
 - － eServices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 － 매출액별 과세주기*가 끝나고 28일 이내에 VAT 환급 신청 요망
- * 연매출이 1억5천만AED 이상일 경우 월별, 1억5천만AED 미만일 경우 분기별

□ 주요 위반사항 및 벌금

벌과금 사유	벌금액(AED)	비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미등록	20,000	
세금관련 각종서류 아랍어본 제출 요구 불응	20,000	제출 요구 시에만 적용
회계장부 및 상업장부 미작성	10,000	시정되지 않고 2차 적발시 50,000AED

벌과금 사유	벌금액(AED)	비고
세금포함 가격 미표시	15,000	
부가세 포함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5,000	규정 위반 세금계산서 건당 5,000AED
소득신고 미제출	1,000	24개월 내 2차 적발시 2,000AED
세금 미납		미납액의 2%, 납입기한으로부터 7일째부터 4% 가산

□ 지정구역(designated zones) 관련 규정

○ 지정구역(designated zones) 이란

- 법령 목적상 지정구역은 폐쇄된 프리존(fenced freezone)을 의미함.
- 폐쇄된 프리존은 인력 및 상품의 출입 관리 목적의 보안 및 통관 절차를 갖춘 특정 지리적 구역을 지칭

* 대표적인 예로 주로 상품 무역에 관여하는 JAFZA(Jebel Ali Free Zone), DAFZA(Dubai Airport Free Zone)이 있음. 서비스 관련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는 비폐쇄 프리존(unfenced freezone)으로 제외

○ 적용 규정

- 지정구역은 UAE 부가세법상 UAE 영토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지정 구역간 상품 공급은 과세 제외
- 지정구역 내에서 자연인 혹은 법인에게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과세, 최종소비 목적이 아닐 경우 과세 제외
- 지정구역 내 서비스 공급은 일반 과세
- 지정구역 내 수도나 에너지 공급도 일반 과세
- 다만, 지정구역 내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규정(e.g. 과세대상금액 등록기준 초과시 부가세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증빙 보관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과규정

- 도입 목적 :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조세가 신설된다는 점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 대금 청구 등 악용 사례를 피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공급시기 : VAT 시행 전에 관련 대금 지불 혹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재화와 용역이 VAT 시행 이후 제공시 실제 재화와 용역의 제공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
 - VAT 도입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급의 전부 혹은 일부가 VAT 도입 이후 이루어졌으면 VAT 조항이 없더라도 VAT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
 - 단, 공급받는 자가 VAT 등록을 했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공급자가 계약액 외에 VAT를 공급받는 자에게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
 - VAT 도입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VAT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계약 금액에 VAT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Mechanism)

- 도입 목적 : GCC 외 국가에서 재화나 용역을 수입할 경우, 역외 공급자가 UAE 내 VAT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
- 주요 내용
 - 수입 관련, 수입자가 UAE 내 VAT 등록자라면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며, 수입자가 해당 매입금액을 부가세 신고시 자신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세 납부(만약 해당 부가세 상당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 매입으로 신고하게 되며, 이 경우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은 없게 됨.)
 - 수입 관련, 수입자가 UAE 내 VAT 등록자가 아니고 수입 에이전트가 VAT 등록자라면 해당 에이전트가 VAT를 납부

III

부가가치세 FAQ / 우리 진출기업 Q&A

1

사우디아라비아

□ 부가가치세 FAQ

○ 부가가치세는 언제 도입됩니까?

- 2018.1.1일부로 시행 (경과규정 : 2017.5.30일 이전 체결된 용역 및 서비스 공급 계약은 계약 만기/갱신일 또는 2018.12.31일중 빠른 기간 내까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품목은 무엇입니까?

-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품목이나 일부 제품은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됨.

○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입니까?

-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5%로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영세 적용

○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2018.1.1일 이전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어떠한 기업도 시행일인 2018.1.1일 이전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 사업자는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세 가격을 지불하지 않음. 비용은 매출부가세로부터 매입부가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음 그러므로 최종소비자가 부가세 시행 전 가격과 비교하여 5% 인상된 가격에 직면함.

○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사우디 국세청(GAZT)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 사우디국세청(GAZT)는 사우디에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당국임.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의

등록 및 철회를 책임지며 부가세 환급 신청 및 부가세 환급을 관리하고 부가세 감독 실사와 회계를 책임짐. 또한, 명시된 부가세 규정의 미준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짐.

o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홈페이지(www.vat.gov.sa) 참고 요망

o 부가가치세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먼저 부가세 등록 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등록 대상이면 사우디 국세청(GAZT)의 홈페이지(www.gazt.gov.sa)를 방문하여 과세식별코드를 부여받고 VAT 등록을 하여야 함. VAT 등록이 성공하면 사우디국세청은 등록증과 별도 VAT 식별번호(Electronic Identification Number)를 제공함.

o 사우디 비거주 외국 공급업체도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사우디 비거주 외국공급업체(재화/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등록 대상 기업(연간 375,000리알 이상의 공급실적 또는 공급예상액)에 해당될 경우 사우디 내 법인(또는 자연인)을 VAT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VAT 대리인이 VAT 납부 및 환급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o 부가가치세 등록시 필요 정보는 무엇입니까?

– 기업인(개인)의 공식명칭, 거주 또는 영업장소의 주소, 전자 이메일 주소, 사우디국세청발급 기존전자식별코드, 사업자등록증번호, 연간 공급액 또는 연간지출액, 부가가치세 등록 유효일 또는 대체 의무 유효일 등

o 부가가치세 등록 대상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 연간 매출액(또는 연간 예상 매출액)이 187,500리알 이상 미만이면 등록 면제, 187,500리알에서 375,000리알이면 자발적 등록 대상, 375,000리알 이상이면 의무 등록 대상임. 다만 375,000리알에서 1백만 리알 이하이면 의무등록기간이 2018.12.31일까지 연기됨.

- 사우디 내 또는 GCC 내 동일 회사의 지사나 법인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사우디 내(사우디 외 소재 기업은 제외)의 동일 법인이나 지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그룹으로 묶어서 부가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단, 동일 법인이나 지사의 자격요건은 각 법인이 사우디 내에 거주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각 법인의 자본을 50% 이상 보유 또는 소유(의결권 금액)하고 있어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자 등록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지난 1년간 매출액 및 향후 1년 매출예상액이 1백만 리알(약 267천 달러)이하의 과세자이면 2018.12.31일까지 등록 유예가 가능함.
-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 부가가치세 환급(Tax Return)의 양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됨.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 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4백만 리알(약 1.07백만 달러) 초과하면 매월 부가세 환급 신청가능하고 기타 과세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의 현금주의 회계 조건은 무엇인가요?
 - 연간 매출액 또는 예상매출액이 5백만 리알(약 1.34백만 달러)미만의 과세자는 현금주의 회계를 신청할 수 있고 상기 상한선을 초과하는 과세자는 발생주의 회계를 사우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사우디 내에서 판매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재화 및 서비스가 사우디 리알 외의 통화로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사우디 중앙은행(SAMA)의 일간 고시율을 사용하면 됨.

-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슬람력(Hijri)으로 적용(사용)해야 하나요?
 - 아님. GCC 부가가치세 통일협약에 따라 그레고리력을 사용해야 함.
- 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선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님. 기업이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매입 부가가치세액과 매출 부가가치세액의 차액만 사우디 국세청에 납부하면 됨.
- 과거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정정은 어떻게 합니까?
 - 과거 세금계산서로 신고된 과다 및 과소의 부가가치세액을 Credit Notes(과다일 경우)와 Debit Notes(과소일 경우)로 이용하여 정정 가능함.
- 과세자가 지불할 부가가치세액은 사우디국세청에 어떻게 납부합니까?
 - 과세자는 은행 송금(은행의 SADAD 지불시스템)을 통해 사우디 국세청의 지정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면 됨.
- 소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 1,000리알(267달러) 이하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이 부가가치세 인보이스(Simplified Invoice)를 발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청을 위해서 외부 회계가 요구되나요?
 - 사우디국세청은 추가 회계를 요구하지 않음.
- 외국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인가요?
 - 예, 수수료도 부가세 적용임.
- 부가가치세 적용 품목과 면제품목이 혼합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 전체 매입 부가가치세액에서 과세품의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비례적으로 분리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품과 면제품의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 수입품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입니까?
 - 모든 수입품은 영세율이나 면제품이 아닌 경우, 부가세 적용대상이며 수입시 사우디 관세청에 수입세 지불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국에 수리를 위해 수출 후 사우디로 재수입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 재화가 단지 정비를 위해서 수출 후 재수입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재화가 성능이 개선되거나 향상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사우디로 수입되어 재수출된 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 재수출용 목적으로 수입된 재화에 대해 재수출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부가세 미적용, 재수출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부가세 지불해야 합니다.
- 고객 사은품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인가요?
 - 고객당 200리얄(약 54달러)미만의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미적용
- 사우디 국세청(GAZT)은 언제 부가가치세를 환급합니까?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의 승인 후 6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좌로 환급됨.
- 법인세를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까?
 - 사우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과세자의 다른 세금으로 상쇄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면 사우디국세청은 보상을 합니까?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의 승인 후 60일 이내 환급이 안 되더라도 추가 보상은 없음.
- 사우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관련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합니까?
 - 사우디국세청이 발부한 벌칙 결정에 대해 고지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며 사우디 정부는 부가가치세 위반 및

이전에 대해 2개의 분쟁 해결 위원회(VAT First Instance Committee, VAT Appeals Committee)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및 전자상거래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입니까?

- 예, 온라인 및 전자상거래의 모든 재화 및 서비스는 표준세율(5%)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정부기관에 대한 공급품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입니까?

- 예,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공급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사우디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의 유틸리티 요금(수도 요금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 공공서비스에는 표준율(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부가가치세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장기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 부가가치세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장기 계약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은 공급자에게 계약갱신일/만기일 또는 2018.12.31일중 빠른 기한까지 영세율이 적용됨. (단, 공급계약체결일이 2017.5.30. 이전이며 고객이 매입부가세 공제 자격이 있거나 부가세 환급 자격이 있고 고객이 공급자에게 매입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면 고지서(Written Certification)를 제공해야 함.)

□ 우리 진출기업 Q&A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에게 부가세관련 질의를 접수하여 사우디 국세청(자카트청, GAZT)과 E&Y 회계 법인을 통한 답변과 부가세법, 부가세 시행령 및 부가세 매뉴얼을 참고하여 답변이 작성되었으나 해당 기관(자카트청 및 E&Y)의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답변이 접수된 관계로 답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회계 처리시에는 귀사와 거래하는 회계 법인에게 지문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A사 (IT업종)

- Q1. 인보이스나, 영수증 등 이런 것을 발급하거나 받을 때 임의로 지정한 형식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실행된 이후에는 이것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포맷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1. 부가세표기 인보이스나 영수증에 대해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인보이스 양식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고 기타 언어는 옵션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반드시 부가세 인보이스나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부가세 인보이스 표기 내용 : 인보이스 발행일 및 공급일, 문서식별을 위한 인보이스 일련번호, 공급상 (법)인명, 주소 및 세금코드(TIN), 고객 (법)인명, 주소 및 세금코드(TIN), 재화 수량, 서비스 성격 및 범위, 전체 수입액(부가세액, 세율, 면제 등 포함), 부가세 미포함 단위당 가격, 단위당 가격에 미포함된 할인 및 리베이트 설명, 전체 부가세액(리알 표기), 부가세 계산시 사용된 영세율, 면제, 마진의 공급 설명, 이윤 등
- Q2. 저희 업체가 부가세를 내는 대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A2. 자카트청에서 자동등록은 없습니다. 과세대상회사가 직접 자카트청에 부가세대상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o B사 (건설업종)

- Q1. 사우디 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회사의 사업이 VAT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면세 대상인지요?
- A1. 부가세 과세 대상은 공급 또는 판매에 대한 재화/서비스이지 회사의 비즈니스나 회사 자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내지 판매시 부과되는 것이 부과세입니다.)
- Q2.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2017년 5월말 이전에 체결되어 2018년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면, EPC의 하도업체들도 2018년에 영세율을 적용받는지요?
- A2. 부가세는 표준율(5%), 영세율(0%), 면제로 구분됩니다.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표준율 5%가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는 수출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품, 보건부 등록 의약품/의료기기, 투자용 광물 그리고 국제 운송서비스 등이며 면제는 금융서비스와 회사 직원의 거주용 부동산 구매 및 임차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o C사 (건설업종 및 무역업종)

- Q1. 부가세 적용 범위(재화, 용역 등) 그에 따른 요율 및 환급 여부
- A1. 부가세는 표준율(5%), 영세율(0%), 면제로 구분됩니다.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표준율 5%가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는 수출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품, 보건부 등록 의약품/의료기기, 투자용 광물 그리고 국제 운송 서비스 등이며 면제는 금융서비스와 회사 직원의 거주용 부동산 구매 및 임차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연간 매출시 발생한 매출 부가세(Out put Vat tax)와 원자재 구입시 지불한 매입 부가세(Input Vat Tax)의 차액을 계산하여 플러스(+)이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마이너스(-)면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 Q2. 기존 진행 PJT(현재 공사 중, 본사 인원이 시공 및 현지 EPC 기업에 인보이스 발행)에 대한 적용시 기존 계약 조건 (부가세 미적용)의 변동 유무 등
- A2. 2017.5.30일 이전 프로젝트 계약시 계약 만료/갱신일 또는 2018.12.31일까지 부가세 면제이나 2017.5.30이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18.1.1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 적용됩니다. 2017.5.30일 이전 프로젝트 계약 후 계약 만료/갱신이 2018.12.31일전에 발생하면 계약 만료/갱신일까지 부가세 면제되고 이후는 부가세 납부해야 합니다.

o D사 (무역업종)

- Q1. 제품의 보증수리에도 부가세 5%가 적용되나요?
- A1. 예 모든 재화 및 서비스가 부가세 5%가 적용됩니다.

o E사 (건설업종)

- Q1. 기존 계약분 영세율 적용 (사우디 세법 상 경과규정- VAT Implementing Regulations Article. 79: Transitional Provision.) 관련, 영세율 적용을 위해 준비해야 할 특정 서류 (Form)가 있는지 여부, Article 79 상에는 고객의 서면확인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확인 서류를 받으면 되는지?
- A1. 특정 서류는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Vat Return) 절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 Q2.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A2.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는 수출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품,

보건부 등록 의약품/의료기기, 투자용 광물 그리고 국제 운송 서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Q3. 기존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ex. 공기연장 등) 시 영세율 또는 일반과세 적용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하도급, 벤더 계약의 경우 발주처 (모계약)을 준용해서 고려가능한지 여부 포함)
- A3. 부가세 및 영세율과 일반과세는 자카트청에서 결정하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서비스는 부가세법이나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Q4. 발주처와 On/Off-shore 분리계약을 통해 Procurement portion이 Out-of - kingdom (OOK)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 VAT 적용방법으로 OOK 자재 통관 시 부담하는 매입 VAT 적용 관련, 통상 수입자가 시공사로 되어있어 현지 법인 또는 지사가 매입 부담해야 하나, 실제 재화의 거래 주체가 본사와 발주처 (아람코의 경우 아람코 네덜란드)인 바 매입VAT 적용 시 발행 여부 (환급 시 가산세 위험부담 또는 VAT 부담 후 비공제 시 추가 원가부담 등)
- A4. 공급업체인 한국회사는 매출 부가세(Output tax) 인보이스를 사우디 발주처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Q5. 발주처 Retention Release시 일부 발주처가 요구하는 Invoice 를 Tax Invoice로 보아 VAT가 적용 될 가능성은 없는지?
- A5. 부가세 도입시 모든 인보이스는 부가세환급용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용인보이스가 아닌 경우, VAT 적용대상 아닙니다.

o F사 (건설업종)

- Q1. 공급품이 표준율 적용 제품과 영세율 제품으로 구성시 적용 부가세율은 ?
- A1. 재화(제품)가 영세율과 표준부가세율 제품으로 구성될 경우, 비례부가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전체 구성품 중 영세율 부과대상 비율, 표준세율 부과대상 비율을 적용해서 부가세 대상 제품만을 처리하면 됩니다.
- Q2. 바이어가 일부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현물 - 중고품을 신품으로 교체 등-로 지불을 요구할 경우, 공급가액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은 무엇인가요?
- A2. 현금은 부가세의 표준율을 적용하시고 현물(Kind)는 시장 공정가격의 부가세 표준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시장 공정가격은 해당 (또는 유사) 상품의 시장 판매가격을 적용하면 됩니다.
- Q3. 수입품의 세관 통관시가 아닌 부가세 환급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지불을 연기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 A3. 부가세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부가세 금액만큼 보험 부보를 해야 합니다.
- Q4. 외국에서 수립 또는 제작 완료를 위해 임시 수출할 경우, 재수입시 부가세 적용대상인가요?
- A4. 모든 수입품은 부가세 적용대상입니다. (상기 영세율 및 면제품 제외)
- Q5. 과세자가 공급상에게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을 때 미지불 대금으로 계산된 매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나요?
- A5. 예 가능합니다. 기간은 과세해당기간 1년 내입니다.

- Q6. 고객과 하도급업체간 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공제될 선수금에 대해 우리는 언제 매출 부가세 및 매입 부가세를 청구하고 지불해야 합니까?
- A6. 부가세 적용시점은 인보이스 발생시점, 대금 지불일 또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일 기준입니다.

- Q7. 대출 및 보증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이자는 부가세 적용 대상입니까?
- A7. 아닙니다. 은행 이자나 대출금의 이자 또는 대출시 비용은 부가세 미적용 대상입니다.

- Q8. 프로젝트 종료 후 외국회사에게 반환하거나 사우디 밖으로 양도할 리스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A8. 고정자산 임차시 매입 부가세(Input tax) 적용, 나중에 장비 Transfer 시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장비 임차해서 사용하고 반납이므로 최종소비자가 되어 부가세 납부하는 것입니다.

- Q9. EPC 업체가 사우디 밖의 회사와 구매 계약을 하고 수신인으로 자재를 공급받을 경우, 부가세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세관에 매입부가세를 납부하고, 어떻게 매출 부가세를 부과시킵니까?
- A9. 사우디 내에서 자재를 공급받는 업체(수입자)는 매입 부가세(Input tax)를 수입시 관세청에 납부하면 되고 공급받는 업체(수입자)가 최종소비자이면 문제가 없고 최종소비자 아니면 매출 부가세(Output tax)를 발생시켜 나중에 자카트청에 부가세 환급 절차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사우디 밖 비거주자는 자재 가격과 부가세를 공급받는 업체(수입자)에게 청구하여 부가세는 부가세 대리인을 통해 자카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o G사 (건설업종)

- Q1. 인보이스에 유보금 (PAC, FAC) 항목이 있을 경우, VAT 계산은 ?
예) 청구액 100 / 유보금(PAC) 10, 유보금(FAC) 10 / 순청구액 80인 경우 VAT 계산은 $100 \times 5\%$ 인지 아니면 $80 \times 5\%$ 인지 ?
- A1. 유보금은 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2. 공사 유보금 (PAC, FAC) 청구 시, VAT 적용 여부 ?
- A2.: 유보금은 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3. 공사 계약은 2017년 5월 30일 이전이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공사물량 증가로 공사 계약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되는 금액만 VAT 대상인지 ?
- A3. 회계법인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2017.5.30일 이전 계약의 물량 공급은 2018.12.31일까지 부가세 미적용이나 2017.5.30일 이후 계약의 물량 공급은 부가세 적용대상입니다. 계약서를 별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Q4. 용역의 수입은 VAT 대상인지 ? 예) 미국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엔지니어가 현장 방문) 을 받고, 당사가 용역대금을 미국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동 용역계약은 VAT 대상인지 ?
- A4. 예 용역(Service)도 부가세 적용대상입니다. 모든 재화(상품)과 서비스(영역)이 부가세 적용대상입니다.

- Q5. 자재 수입시 수입 VAT 적용 관련, 수입 VAT도 경과규정 적용 가능한지 ? (경과규정상 2017년 5월 30일 이전 계약은 영세율 적용 가능) 경과규정 적용가능하면 어떻게 소명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A5. 2017.5.30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 2018.12.31일 이전 계약 만료/갱신할 경우, 계약만료/갱신일부터 부가세 적용되고 2018.12.31.일 이후 계약 만료/갱신이 발생하면 2018.12.31일까지 부가세 미적용입니다.

- Q6. 자재 구매 계약 관련, 계약일은 2017년 5월30일 이전이고, 계약서에 납품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인보이스는 VAT 대상인지 ?
- A6. 납품(공급)일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일이나 인보이스 발행 후 1년 내 공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과규정으로 인해 2017.5.30일 이전 계약분은 2018.12.31.일전까지 납품(공급)할 경우 부가세 비적용 대상입니다.

- Q7. 시장에서 영세업자에게 잡자재를 구매하고, Tax Invoice 가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한 경우, 세무신고 시 비용신고 가능한지 ?
- A7.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신고는 가능합니다.

- Q8. 공사 하자보수 기간에 발주처의 클레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VAT 대상인지 ?
- A8. 아닙니다. Claim은 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9. 공사 지연에 따른 LD (liquidate damage for delay)를 지급하는 경우 VAT 대상인지 ?
- A9. 아닙니다. LD는 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10. 공사현장에서 고철이나 잉여 자재, 중고차량 매각시, 매출

VAT 적용 대상인지? VAT 적용 대상이라면 공급가액은 매각금액으로 하면 되는지?

- A10. 예 적용대상입니다. VAT 공급가액은 매각금액입니다.
- Q11. 수입 VAT 의 신고 및 납부는 세관 (Custom departement) 에 하는지, 아니면 세무당국(GAZT) 에 하는지 ?
- A11. 수입 VAT 신고 및 납부는 세관입니다.
- Q12. 수입 VAT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A12. 예 가능합니다.

o H사 (건설업종)

- Q1. '17년5월30일 이전 본 계약 체결 후, 17년5월30일 이후 변경 계약 체결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공기연장, 금액 변경 등)
- A1. 변경계약 체결시부터 부가세 적용대상입니다.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서비스 수출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품, 보건부 등록 의약품/의료기기, 투자용 광물 그리고 국제 운송 서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Q2. '17.5.30 이전 자재공급용역 체결 시 수입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A2. '17.5.30일 이전 계약시는 중간에 계약만료/갱신이 없으면 2018. 12.31일까지 부가세 적용대상 제외입니다.
- Q3. 확인서(written certification)의 형태 및 발주처에서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은?
- A3.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무조건 매입 부가세 인보이스를 받아야 합니다.

- Q4. 시행령 제79항 영세율 적용은 선택인지 필수 사항인지?
- A4. 선택입니다. 부가세 납부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환급 신청을 희망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Q5. 당사와 발주처간 매출세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 시 관련 PJ의 하도업체와의 '17년5월 이후 계약의 매입세액 공제는 영향이 없는지?
- A5. 귀사와 발주처간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하도급업체와 영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주체가 별개이면 별건으로 처리됩니다.

- Q6. 관련 세법 상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모든 비거주자는 세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EP 계약이 되어 있는 한국 법인(OOK, HENC)의 경우 대리인 선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 A6. 비거주자도 사우디 내 기업이나 개인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시 부가세 납부 등록을 해야 하며 비거주자이므로 세무 대리인(Tax Representative)를 선정하여 부가세 납부 및 환급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Q7. 세무대리인 선정 시 해당 비거주자는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A7. 부가세 과세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Q8. 수입부가세는 통상 공급 받는 자가 관세청에 납부 후 환급 받으나, 계약 형태 상 수입자(Consignee, 당사IK)와 공급 받는 자가(발주처)가 상이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능 여부 및 공제 주체는? 수입자인지 발주처인지요?

- A8. 사우디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한국의 수출상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예 한국 수출상→수입상→발주처가 되면 한국 수출상(가격 USD100, 부가세 5%이므로 USD5, USD100+USD5)→수입상(USD100+USD5)→발주처(USD100+USD5)이며 부가세는 매입부가세-매출부가세이므로 수출상이 USD5 매출부가세 납부(나중에 매입부가세 USD0 이므로 USD5를 부가세 환급받으면 됩니다.) 수입상은 가격 변동없이 그대로 판매하면 매입부가세 USD5, 매출 부가세 USD5로 부가세 USD0, 발주처는 매입부가세 USD5, 매출부가세0, 따라서 나중에 한국 수출상이 매출부가세 USD5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 Q9. GCC 外 해외 비거주자 업체로부터 장비를 임대하거나 용역 제공을 받는 경우 VAT 적용 여부 및 적용 세율
- A9. 비거주자에게 장비 임대 및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세가 적용되며 부가세율은 5%입니다.
- Q10. UAE(GCC 內)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VAT 적용 여부 및 적용 세율
- A10. GCC 회원국은 한 개 국가로 인정되고 사우디 내 재화 및 서비스 공급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VAT 세율은 사우디와 동일하게 5%, 영세율, 면제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 Q11. 발주처와 한국 법인(OOK, HENC) 간 용역(재화)제공 계약 체결 후 사우디 내 벤더를 통해 발주처에 용역 제공 시 부가세 적용 여부는?
- A11. 사우디 내에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 또는 수입상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Q12. 2017년 이전 Invoice 완료 후, 2018년에 조립완료 또는 공급 완료 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공급시기)는?
- A12. 부가세는 인보이스 발행일, 제품 공급일 또는 대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 Q13. '17년 이전 선수금 수령 후 '18년 이후 선수금 공제 후 기성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선수금 공제 후 금액인지, 선수금 공제 전 금액인지요?
- A13. 선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님. '17년 이전 계약으로 공사 대금은 경과규정으로 2018.12.31일까지 부가세 미적용대상입니다. 2018.12.31이후 공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

- Q14. 현장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식사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여부
- A14. 부가세 적용대상이며 부가세 인보이스 수령시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 Q15. CR 등록 업태 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가 보유중인 고정자산(현장숙소)를 임대할 경우 부가세 적용 여부 및 적용세율은?
- A15. 직원 거주용 숙소 임대는 부가세 면제입니다.

2 아랍에미리트

□ 부가가치세 관련 FAQ

○ 사업자 준비사항은 무엇입니까?

1) 의무사항

- 거래내역을 정확하고 최신으로 기록할 의무
- 거래액 기준으로 VAT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해야 함.
* 의무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 기록을 보관해야 함.
- VAT 등록을 한 기업들은 공급하는 과세 대상 상품과 용역에 VAT 부과
- 사업 관련(business related) 발생한 매입세액 환급요청
- 정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일련의 사업 내용 및 거래 내역 보관
- 온라인으로 VAT 징수액과 대정부 VAT 납세액 보고
- 징세액이 납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납세액이 더 크면 차액분에 대해 환급 신청 가능

2) 분야별 준비 사항

- 회계관리, 장부정리, IT 시스템 및 인력 관리 등 점검 요망

분야	내용
회계 및 행정	현금 흐름, 매입세액 공제, 회계 관리 및 장부정리
IT	시스템 조정, 세무감사 대비
인력	복지혜택, 세무 교육, 신규 인력 고용(회계사 및 세금관련 자문)
마케팅	가격 책정, 계약 관리

○ VAT 세금계산서 보관기간은 몇 년입니까?

- 발행 및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최소 5년간 보관

○ 보관이 필요한 서류 상세 목록은 무엇입니까?

- 모든 재화와 서비스 공급 및 수입 내역
- 모든 세금계산서 및 세금공제 전표 혹은 대체 서류
- 사업운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의 목록과 관련 VAT 납세 내역

-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 내역
- 수출 재화와 서비스 목록
- 회계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가해진 수정 및 조정 내역
- 과세대상 공급관련 매출세액 내역
- 매입자과세가 적용되는 공급관련 매출세액 내역
- 오류수정 혹은 조정 이후 매출 세액 내역
- 공급 및 수입관련 환급 가능한 매입세액
- 오류수정 혹은 조정 이후 환급 가능한 매입세액
- 회계 기록 및 사업 활동 관련 서류(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정, 임금 장부, 고정자산 기록, 과세주기별 해당 재고 명세서 등)

o 부가가치세와 관세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 부가세는 관세(수입자 납부)를 포함한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o 세금당국 결정에 불복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 세금당국 결정이 있는 지 근무일 20일 내에 재고를 요청
- 세금당국은 재고 신청을 받은 지 근무일 20일 내에 신규 결정 가능
- 세금당국의 수정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세금분쟁결정위원회(Tax Disputes Resolution Committee)에 이의 제기 가능, 위원회는 제기가 있는 지 근무일 20일 이내에 결정
- 단, 이의는 수정 결정이 있는 지 20일 이내에 제기하고, 문제가 되는 세금과 벌금을 사전에 완납해야 함.
- 위원회 결정에 불복시 법원에 제소 가능, 위원회 결정 고지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제소

o 기업의 매입세액 공제 신청 가능 조건이 무엇입니까?

- 기업이 과세가능 주체
- VAT가 정당하게 부과되고 VAT가 납세되었다는 서류 보유
- 취득한 상품과 서비스가 과세가능한 공급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의도되어야 함.

- 공급 관련 합의된 대금 지불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기로 의도된 금액에 한해서 환급 신청 가능
- 부동산 보유자는 VAT 등록을 해야 합니까?
 - 부동산 보유 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등록 불필요
- 상업용 및 거주용 공간이 혼합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거주용 공간에는 거주용 부동산 관련조건이 적용, 상업용 공간에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조건이 적용됨.
- 토호국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 각 토호국별 소득 신고 등 환급 신청을 위한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B2C 거래의 경우 거래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등 매우 간단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기관 공급도 VAT 부과 대상인지요?
 - 해당 사업 활동이 국가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다면 부과대상임.
 - 단, 민간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거나 유일한 공급자라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중고품 등 재판매 이윤(profit margin) 관련 부가세가 궁금합니다.
 - 납세등록자가 비등록자로부터 재판매 목적으로 중고품을 구매할 경우, 재판매 관련 이중과세를 막고자 관련 규정 도입
 - 이윤은 상품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이로, 해당 이윤은 납세 등록자가 납입해야 하는 VAT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
- 악성채무 탕감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 VAT 등록 사업자들은 VAT 등록 사업자에 의해 탕감된 악성채무와 관련된 VAT 만큼 매출세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UAE 비거주자도 VAT 납세의무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 UAE 내에서 과세대상 공급을 생산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VAT 등록을 해야 함.
 - 단, UAE 등록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구매를 했을 경우 매입자 등록 제도를 통해 VAT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음.
- 부가세 환급 절차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 별도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영업일 20일내 환급 여부를 결정함.
 - 이후 실제 환급 시기는 추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자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실제 적용시에는 최종 시행령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영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별도로 납세의무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 단일 과세대상자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영업장은 단일 등록 대상임.
- 단일 과세 단위(tax group)를 형성할 수 있는지요?
 - UAE내 설립되었고 공통적인 지배 구조하의 법인일 경우 경제, 금융, 규제(법, 지분 혹은 의사결정구조)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단일 세금 단위로 등록 가능
 - 단일 세금 단위 내의 거래는 VAT 부과대상이 아니며, 대표 구성원이 통합 VAT 환급 신청을 하면 됨.
- 반품된 재화 및 환불액 관련 VAT 처리가 궁금합니다.
 - 고객이 재화를 반품하고 소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었을 경우 소매업자는 세금 공제 전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환불액 만큼 감액가능
 - 단, 매출세액 감액은 환불이 이루어진 회계 주기에 이루어져야 함.

□ 현지 진출 기업 QnA

o A사 (건축설계업)

Q. 영업지사의 경우 UAE 내에서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FTA⁹⁾ 등록이 필요한지? (매달 운영비는 전도금으로 송금받고 있음)

A. 해당 영업지사가 실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기능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VAT 사업자 등록은 불필요함. 이 경우 부가세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이 장부를 작성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임.
- 영업지사가 영업지원 또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지점(Branch)일 경우에는, 지사가 공급하는 총 용역 금액이 의무 등록 기준 금액 (375,000 AED)을 초과하는지 살펴야 하며, 초과할 경우 VAT 사업자 등록이 필요함.
- 부가세 사업자가 된다면, 영세가 적용되는 본사 청구 비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계약서 및 VAT 인보이스 구비가 필요하며, 기타 증빙이 요구될 수도 있음.

o B사 (건설업)

Q1. 2018년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남아있는 기 종료된 프로젝트의 기성분 (설계변경 포함 → 공사금 증액분)에 대한 세금

A1. 프로젝트가 2018년 이전에 종료되었으나 프로젝트 미청구 기성분이 있어 이를 2018년에 청구한다면, 2018년 이전에 용역이 공급되었으므로 VAT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임.

Q2.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발주처가 각각 국영 기업일 때와 일반 기업일 때)

9) Federal Tax Authority(UAE 연방세무국) :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 도입계기로 2017년 신설

A2.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청구되는 기성분에만 VAT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VAT 시행 전/후가 걸치는 용역 공급의 경우, 예) 2017년 12월 초~ 2018년 1월 말까지의 프로젝트의 기성분은 청구는 기간 계산해서 18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VAT 적용하여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임.

o C사 (종합상사)

Q. 두바이 프리존(Freezone)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임. UAE항 수출 시에는 주로 CIF 조건으로 한국에서 UAE 항구까지 배송하며, 선적서류에는 '수출자 : 자사, 수입자 : UAE 바이어'를 명기함. 자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부가세는 수입자인 UAE 바이어가 납부를 하며, 수출자인 자사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음. 다만, 자사가 UAE 법인이기 때문에 UAE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재확인하길 원함.

A. 본사는 수출 시 'Bill to UAE법인, Ship to UAE 바이어'로 하며, UAE 법인은 'Bill to UAE 바이어'를 하는 구조로 이해됨.

본사가 수출한 물품이 Fenced Free Zone에서 거래선에 직공급되므로, UAE 바이어에게 Billing만 하는 UAE 법인은 본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임.

o D사 (컨설팅)

Q. 한국 회사 A 회사와 자사간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용역 업무 주요 내역은 A회사의 중동 내 프로젝트 관련 제3국인 채용, 헤드헌팅 및 항공 발권 서비스 등임. 아래와 같은 사업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VAT 이슈는 없는지 알고 싶음.

-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등에 위치한

현장이며, 각국 현장에 제3국인 채용을 인도, 필리핀, 네팔 등의 현지 에이전시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음.

- 자사는 A사 본사와 체결 되어 있는 용역 계약에 따라 월단위 일정 계약 비용(기성)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채용 업무에서 현장과 송출국 에이전시 간에 발생 하는 매출이나 마진은 없음. 단지, 중간에서 인보이스를 다양한 국가 에이전시에서 취합하여 각 현장에 전달하고 취합된 에이전시 수수료를 중간 전달 해주는 역할을 함.

- A1. 한국 기업 A사가 귀사가 위치해 있는 UAE에 프로젝트 사업장(FE : Fixed Establishment)이 있을 경우, 귀사는 A사에 VAT 5%를 적용하여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A2. 한국 기업 A가 UAE에 사업장(FE)이 없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A3. 제3국 에이전시가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할 경우,
- 1) VAT가 시행되는 사우디의 에이전시가 제공한 용역(청구한 비용)은 GCC 내부 공급으로 간주, 귀사가 공급하고 소비하는 형태가 되어 부가세 납부 영향은 없으며 다만 신고 의무만 있음.
 - 2) VAT가 시행되지 않는 쿠웨이트 에이전시가 제공한 용역(청구 비용)은 매입자납부제(Reverse charge mechanism)가 적용됨 (VAT 부담 없음).

o E사 (은행)

Q. 보증서 관련 보증료도 과세대상 요금인지?

- A. 관련 보증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보증 자체는 금융 서비스로서 면세 거래로 간주되며 보증료(fee)는 부가세 과세 대상임.

o F사 (인력공급업)

Q. 두바이 프리존 소재 회사가 아부다비의 해상(Offshore) 건설현장 (아부다비 국영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에 인력공급 하는데 있어 부가세 도입시 아래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함.

(A 사: 건설사/B 사: 인력 공급사 /C 사: UAE 현지의 다른 인력공급사)

Q1. 인력을 한국 등 외지에서 B사가 인력을 공급 받아 A사에 공급 하고, B사가 A사에 청구하는 경우에 VAT?

A1. UAE에 위치한 B사가 공급하는 서비스가 프리존에 있는 A사에 국한된다면 VAT 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만약 B사가 A사에게 공급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A사의 해상 사업장(offshore site)에 공급되는 것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Q2. B사가 C사(UAE 등록회사)로 부터 인력을 공급 받아서 A사에 다시 공급한 경우, B사가 A사에 청구하는 경우 VAT?

A2. 1번 답변과 동일함.

Q3. 2항의 경우에서 C사가 B사에 대해 청구시 VAT?

A3. UAE에 위치한 C사가 UAE에 위치한 B사로 공급하는 서비스 역시 5% VAT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Q4. 건설현장 인력 공급에 대한 VAT 관련 특기할 사항이 있는지?

A4. 현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VAT 관련 특이한 내용이 없을 것 같으나, 새로운 상황이 추가될 경우 특이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o G사 (자동차부품 판매업)

Q. 두바이 Main land¹⁰⁾에 법인을 두고 GCC 국가를 포함한 인근국에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음. 주요 매출은 본사에서 매월 송금되는 판매수수료 명목의 운영비이며 이와 별개로 본사에서 고객사에 직접 수출을 하지만 중동 법인에서 고객사로부터 수금 후 송금하는 중계무역 매출임(법인 마진 없음, 회계 처리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동액으로 처리)

Q1. 부가세 도입시 현재 본사에 청구하는 판매 수수료와 중동 법인의 중계 무역 매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A1. 본사에 청구하는 판매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두바이 법인 중계무역 매출은 본사(두바이 법인)가 Fenced Free Zone에서 거래선에 직공급하는 구조로 이해되며 이러한 경우 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임.

Q2.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신고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A2. 영세율이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와 VAT 세금 계산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기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음.

Q3. 중계무역시 본사 법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중동법인 마진없이 진행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지

A3. UAE에는 법인세가 도입되지 않았고, 중계무역이 Fenced Free Zone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UAE에서 별도 VAT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임.

Q4. 현재 운영비로 현금 사용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없는지?

10) 프리존 외 지역

A4.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현금 출처 및 지출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구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별도 세무조사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H사 (금융업)

Q. 프리존 소재 기업에도 VAT가 적용되는지?

A. Fenced Free zone내에서 재화의 공급은 비과세 대상이나, Free zone내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는 5% VAT 과세대상이며,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는 5% VAT 과세대상으로 보임.

o I사 (보험업)

Q. 두바이 국제금융프리존(DIFC)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사가 GCC 국가 외에 위치(서울, 싱가포르, 런던)한 관계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만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만일 매입세액만 환급받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대상이 무엇인지 궁금함. 예를 들면, 법인 명의로 집행하는 모든 일반관리비(사무실 임차료, 통화료, 접대비 등)에 포함된 VAT도 모두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항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A. GCC 외 지역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매입세액 환급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국한된다고 보며됨. 단, 접대비 성격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1**주요 산업별, 항목별 부가세율****1. 사우디아라비아**

항목	부가세율
식음료	
식음료	5%
교통	
국내에서의 교통수단	면세
국제 여객 및 화물용 교통수단(GCC 역내 포함)	0%
GCC 역외 여객 및 화물용 교통수단	0%
화물 및 승객(10명 이상)용의 상업용 교통수단(항공, 해상, 육상) 공급	0%
교통수단 및 여객 및 화물운송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0%
부동산	
상업용 건물의 임차 및 매매 (거주용 건물 제외)	5%
거주용 건물의 매매	5%
보유 및 친척 거주용 매매	VAT 비대상
호텔, 모텔, 서비스 아파트먼트	5%
거주용 임대	면세
학생용 주택 임대	면세
통신 및 전자 서비스	
유선 및 무선 통신과 전자 서비스	5%
금융 서비스	
마진 기반의 제품(가격, 수수료, 환불, 할인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	면세
당좌, 보증금 또는 저축성 계좌의 운용	면세
수수료, 커미션, 상업할인	5%
보험 상품(건강 보험 포함)	5%
이자 또는 대출 마진에 부과되는 대출 수수료(대출, 신용카드포함)	면세
이자 또는 금융 마진에 부과되는 대출 수수료(금융리스 포함)	면세
부실 증권 및 기타 양도성 통화금의 발생 또는 양수	면세
정부 활동	
경제활동이 아닌 정부기관 제공의 공공서비스	VAT 비대상
교육	
민간교육	5%
공공교육	VAT 비대상
석유 및 가스	
석유, 석유 파생 및 가스부문(국내)	5%

항목	부가세율
보건·의료	
공공보건	VAT 비대상
보건부 및 식약청 등재 의약품 및 의료기기	0%
기타 의약품 및 의료기기	5%
투자목적의 금, 은, 백금, 보석류	
순도 99% 이상이고 국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귀금속	0%
순도 99% 미만	5%
기타	
GCC 역외로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0%
급여를 포함한 고용에 따른 고용자의 활동	VAT 비대상
단일 세금 단위 내에서의 공급	VAT 비대상
비GCC 거주자에게 공급되거나 GCC 밖에서 소비된 서비스	0%

자료원 : 사우디국세청(GAZT)

2. 아랍에미리트

항목	부가세율
교육	
사립 혹은 공립학교 제공 교육(대학과정 제외) 및 관련 재화와 서비스	0%
정부 소유 및 정부 후원(50%) 기관의 대학교육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0%
사립 대학기관의 교육 및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5%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	0%
교복	5%
학용품	5%
전자 기기(태블릿, 노트북)	5%
행사를 위한 학교 부지 임차	5%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방과 후 교육	5%
별도의 비용 없이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방과 후 학교	0%
교육 과정 상의 교육 목적의 수학여행	0%
교육 과정 외의 오락 목적의 교내 여행	5%
보건·의료	
백신을 포함한 예방차원의 의료	0%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치료 목적의 의료 서비스	0%
치료 및 예방 목적 외의 기타 의료 서비스 (예시: 선택, 미용 등)	5%
내각 결의에 명시된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0%
내각 결의에 명시되지 않은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5%
기타 의료 용품	5%
석유 및 가스	
원유 및 천연가스	0%
휘발유를 포함한 기타 석유 및 가스 제품	5%
교통	
국내에서의 교통수단(UAE내 항공편)	면세
국제 여객 및 화물용 교통수단(GCC 역내 포함)	0%
화물 및 승객(10명 이상)용의 상업용 교통수단(항공, 해상, 육상)	0%
교통수단 및 여객 및 화물운송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0%
부동산	
상업용 건물의 임차 및 매매 (거주용 건물 제외)	5%
거주용 건물의 완공 혹은 거주용 변환 이후 최초 매매 및 임차	0%
자선용 빌딩의 최초 매매	0%
거주용 건물의 최초 공급 이후 매매 및 임차	면세
호텔, 모텔, 서비스 아파트먼트	5%
나대지	면세
나대지가 아닌 땅	5%
UAE 국민이 자가 주택 건설	5%(환급가능)

자료원 : www.tax.gov.ae

항목		부가세율
금융 서비스		
마진 기반의 제품(가격, 수수료, 환불, 할인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		면세
가격, 수수료, 환불, 할인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제품		5%
대출 관련 이자 (대출, 신용카드, 금융 리스 포함)		면세
주식 및 채무증권의 발행, 배당, 이전		면세
투자목적의 금, 은, 백금, 보석류		
순도 99% 이상이고 국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귀금속		0%
순도 99% 미만		5%
보석류		5%
보험, 재보험		
보험과 재보험 (건강, 자동차, 손해 포함)		5%
생명 보험 및 재보험		면세
식음료		
식음료		5%
통신 및 전자 서비스		
유선 및 무선 통신과 전자 서비스		5%
정부 활동		
지정된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민간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주권 활동		VAT 비대상
주권 활동이 아니거나 민간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활동		재 화와 서비스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 / 서비스 제공자 무관
비영리 단체		
외국 정부 활동, 국제기구 외교 단체 및 선교		VAT 비대상
내각 결정에 명시되어있는 공공복지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선 활동		VAT 비대상
내각 결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비영리 단체 활동		VAT 비대상
위에 명시된 단체의 사업 활동		재 화와 서비스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 / 서비스 제공자 무관
지정 구역(Designated Zones)		
지정구역 내에서의 기업 간 재화의 공급		VAT 비대상
지정구역 내에서의 기업 간 서비스 공급		재 화와 서비스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 / 서비스 제공 장소는 무시
지정구역 외에서의 재 화와 서비스 공급		
본토에서 지정 구역 혹은 지정구역에서 본토로의 재 화와 서비스 공급		
기타		
GCC 역외로의 재 화와 서비스의 수출		0%
급여를 포함한 고용에 따른 고용자의 활동		VAT 비대상
단일 세금 단위 내에서의 공급		VAT 비대상
위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재 화와 서비스공급 (UAE에서의 제품 판매 혹은 서비스 공급 포함)		5%
중고 물품 (예시 : 소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골동품, 수집품		이윤의 5%

참고2 주요 관련기관 정보

1. 국별 주무기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기관명		사우디 국세청 (GAZT : 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	UAE 연방세무국 (FTA: Federal Tax Authority)
홈페이지		www.vat.gov.sa	https://www.tax.gov.ae/index.aspx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Soliman D. Aldoheyan (Indirect Taxation)	Ministry of Finance P.O. Box 2440
	전화번호	+966-11-4349-596	+971 4 777 5777 (Call Center : +971 600 599 994)
	이메일	-	info@tax.gov.ae

2. 국별 회계법인

□ 사우디아라비아

기관명		Deloitte & Touche Bakr Abulkhair Co	PricewaterhouseCoopers (PWC Saudi Arabia)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sa/en	https://www.pwc.com/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Mr. Atif Mustafa (Audit Manager)	Mr. Hisham Assar (Marketing)
	전화번호	+966-11-282-8400	+966-11-211-0400
	이메일	atmustafa@deloitte.com	hisham.alassar@sa.pwc.com

기관명		E&Y	Associated Accountants & Consultants
홈페이지		http://www.ey.com/	https://www.aacpa.com.sa/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Mr. Asim J. Sheikh (Financial Services Market Segment Leader)	Mr. Ayman Othman (Audit Manager)
	전화번호	+966-11-273 4706	+966-11-460-2551
	이메일	asim.sheikh@sa.ey.com	a.othman@aacpa.com.sa

기관명		Osam A. Elkhareiji & Partners Company	Bright Investment Company
홈 페이지		http://www.elkhareijicpa.com/	www.bic.net.sa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Dr. Ashraf Moursi (Managing Director)	Mr. Saud AL Shaibani (President)
	전화번호	+966-12-660-0085	+966-11-464 6006
	이메일	amorsy@oakcpa.com	saud@bic.net.sa

□ 아랍에미리트

기관명		Deloitte	PwC
홈 페이지		www2.deloitte.com/ae/en/html	www.pwc.com/me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이주환 (Manager, Korea Desk)	임원섭 (Senior Manager)
	전화번호	+971-4-506-4905	+971-4-304-3100
	이메일	joowlee@deloitte.com	lim.won-seop@pwc.com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Basit Hussain (Partner, ME Leader BPS)	Levinash Ravindran (Senior Consultant, Indirect Tax)
	전화번호	+971 (0)6 519 9777	+971 (0)4 304 3100
	이메일	bhussain@deloitte.com	r.levinash@pwc.com

기관명		E&Y
홈 페이지		ey.com/mena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김정춘 (Director, MENA Korea Desk)
	전화번호	+965-2295-5320
	이메일	jeong.kim@kw.ey.com
연락처	담당자 (담당부서)	David Betton (Senior Manager, Indirect Tax)
	전화번호	+971 (0)4 332 4000
	이메일	david.betton@ae.ey.com

2017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 시대의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	2017.1
17-002	2017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1
17-003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 통상 일정	2017.1
17-004	호주 화장품시장 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1
17-005	트럼프 취임사에 대한 주요국 반응조사	2017.1
17-006	2016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2017.2
17-007	미 트럼프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 조사	2017.2
17-008	미·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및 수출 여건 분석	2017.2
17-009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2017.3
17-010	2017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3
17-011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2017.3
17-012	중동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3	CIS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4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2017.3
17-015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민국 영향 분석	2017.4
17-016	유럽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4
17-017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및 역외 CIS지역 국가별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2017.4
17-018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 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2017.4
17-019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2017.5
17-020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2017.5
17-021	인도 자동차 & 부품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5
17-022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6
17-023	중남미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6
17-024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2017.6
17-025	주요국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2017.6
17-026	2017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7
17-027	2017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17.7

17-028	러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7
17-029	중동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7
17-030	일본 시니어 시장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2017.7
17-031	주요국의 대미 경협 활동 분석에 따른 의제 제안과 시사점	2017.8
17-032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방식 제언	2017.8
17-033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2017.9
17-034	2017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9
17-035	이란 민영화 현황과 시사점	2017.10
17-036	무역사기 유형별 대표사례 및 대응책	2017.10
17-037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운전 허용 결정, 현지 반응과 시사점	2017.10
17-038	KOTRA 월간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호부진 및 특이동향 (2017.10)	2017.10
17-039	태국 자동차 산업 글로벌 밸류 체인(GVC) 진출 방안	2017.10
17-040	2017년 교육서비스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2017.11
17-041	한눈에 보는 수출유망국 : 의료기기 ①편	2017.11
17-042	KOTRA 월간 수출 동향 (2017.11)	2017.11
17-043	유럽 조선해양기자재 시장 진출 가이드	2017.11
17-044	CIS지역 자동차 및 부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11
17-045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11
17-046	한-이스라엘 경제교류에 따른 수출 및 기술협력 유망품목	2017.12
17-047	유럽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2017.12
17-048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2017.12
17-049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유망품목	2017.12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2017.1
17-002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7.3
17-003	新통상시대 중남미 주요국 다각화 정책과 시사점: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중남미 주요국의 정책과 기회요인	2017.3
17-004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분석과 시사점	2017.4
17-005	저성장 시대 일본기업의 성장전략 분석과 시사점	2017.4
17-006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기업의 현지화 전략	2017.5
17-007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2017.6

17-008	일본 서비스기업의 對아세안 진출전략 분석과 시사점	2017.6
17-009	메르코수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요국 진출 전략과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2017.7
17-010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2017.8
17-011	유라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현황과 경기개선 요인	2017.9
17-012	SDGs 시대, 공유가치창출(CSV)과 비즈니스 기회 : 신흥국 진출전략	2017.11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사례집	2017.1
17-002	ICT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1
17-003	잘나가는 우리기업 해외투자 성공기	2017.1
17-004	2016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연차보고서	2017.2
17-005	2017 해외진출종합핸드북	2017.2
17-006	지사화 우수사례집	2017.3
17-007	2016 서비스업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3
17-008	2017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2017.3
17-009	이란 진출 종합가이드북 2017	2017.3
17-010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6	2017.3
17-011	2016 IP-DESK 백서	2017.3
17-012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투자유치 대응전략	2017.3
17-013	2016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7.3
17-016	코트라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집	2017.4
17-017	정상외교경제활용 백서 2013-2016	2017.4
17-018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achinery Parts	2017.4
17-019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utomobile Parts	2017.4
17-020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hipbuilding & Offshore Plants	2017.4
17-021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erospace	2017.4
17-022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harmaceuticals	2017.4
17-023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ood and Beverage	2017.4
17-024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edical Device	2017.4
17-025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Display	2017.4
17-026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CT	2017.4

17-027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emiconductors	2017.4
17-028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New Renewable Energy	2017.4
17-029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etrochemical	2017.4
17-030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ine Chemicals	2017.4
17-031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Logistics and Distribution	2017.4
17-032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Real Estate	2017.4
17-033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Tourism & Leisure	2017.4
17-034	2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A	2017.4
17-035	SEOUL FOOD 2017 디렉토리	2017.4
17-036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투자유치 방안	2017.4
17-037	권역별·분야별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로드맵	2017.5
17-038	수출바우처사업 활용가이드	2017.5
17-039	Invest KOREA 2016년도 연차보고서	2017.6
17-040	2017 KOTRA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집	2017.6
17-041	SEOUL FOOD 2017 결과보고서	2017.6
17-042	2016 KOTRA 지속가능경영&인권경영 보고서	2017.6
17-043	2016 KOTRA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Management Report	2017.6
17-044	전력기자재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5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6	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7	패션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8	화장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49	교육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1	AI/IoT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2	항공부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3	모바일부품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4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5	지식재산권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6	물류서비스 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전략	2017.7
17-057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erospace	2017.7
17-058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uto Parts	2017.7
17-059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Biopharmaceutical	2017.7
17-060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Cultural Contents	2017.7

17-061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Display	2017.7
17-062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ashion & Beauty	2017.7
17-063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ood & Beverage	2017.7
17-064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2017.7
17-065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Logistics	2017.7
17-066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New & Renewable Energy	2017.7
17-067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Offshore Plant	2017.7
17-068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arts and Materials	2017.7
17-069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2017.7
17-070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Real Estate	2017.7
17-071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emiconductor	2017.7
17-072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pecialty Chemicals	2017.7
17-073	2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Tourism & Leisure	2017.7
17-074	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및 개발동향	2017.7
17-075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7	2017.7
17-076	Doing Business in Korea 2017	2017.7
17-07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2017.7
17-078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September 2017 Edition)	2017.8
17-079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2017.8
17-080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6	2017.8
17-081	2017 外國人投資ガイド	2017.9
17-082	2017 外商投資指南	2017.9
17-083	수출바우처사업 활용가이드 (개정판)	2017.9
17-084	글로벌 화장품 산업 트렌드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17.9
17-085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 화장품편	2017.10
17-086	주요국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조사	2017.10
17-087	알기쉬운 브라질 세무 가이드	2017.10
17-088	2018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17.10
17-089	해외진출 한국부품소재 서플라이어 디렉토리	2017.10
17-090	TAMAS 2017 디렉토리	2017.10
17-091	ICT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3)	2017.10
17-092	국내복귀기업지원종합가이드	2017.11

17-093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7.11
17-094	2017 아스타나엑스포 한국관 종합보고서	2017.11
17-095	2018 해외시장 진출 유망·부진 품목	2017.11
17-096	EU 공공 프로젝트 시장 진출가이드	2017.11
17-097	북미 오일가스 산업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 방안	2017.11
17-098	캐나다 자동차 산업 - 혁신기술 연구개발 동향	2017.11
17-099	당신만 모르는 해외전시회 성공 스토리	2017.12
17-100	수출 중소기업 혁신으로 한계를 뛰어넘다 : 2017 수출혁신기업상 우수사례집	2017.12
17-101	2018 북독일 투자 환경 가이드	2017.12
17-102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중국지역본부 편	2017.12
17-103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유럽지역본부 편	2017.12
17-104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북미지역본부 편	2017.12
17-105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중동지역본부 편	2017.12
17-106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아프리카지역본부 편	2017.12
17-107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일본지역본부 편	2017.12
17-108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편	2017.12
17-109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서남아지역본부 편	2017.12
17-110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중남미지역본부 편	2017.12
17-111	KOTRA와 함께하는 해외 안전 가이드 : CIS지역본부 편	2017.12
17-112	201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사례집	2017.12
17-113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2017.1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7.1
17-002	2017 中美시장 진출확대 설명회	2017.1
17-003	이란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1
17-004	쿠바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2
17-005	(매칭페이) 제1차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활용 상담회	2017.2
17-006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7차 수요포럼 : 북미 인프라 시장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7.2
17-007	2017 유엔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17)	2017.2
17-008	2017 아세안 시장 진출 설명회	2017.2

17-009	2017 GBMP 보건의료 프로젝트 설명회 (Global Healthcare Project Plaza 2017)	2017.3
17-010	GBMP 2017 글로벌 공공조달 의료기기 시장진출 설명회	2017.3
17-011	케냐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2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멕시코 진출전략 세미나	2017.3
17-013	러시아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4	2017 세계 유통시장 진출 쇼케이스 전략설명회	2017.3
17-015	2017 유라시아 진출 세미나	2017.4
17-016	2017 국내복귀기업대상 경영지원세미나	2017.4
17-017	Global Animation Market Trend and Strategy	2017.4
17-018	우즈베키스탄 KSP 섬유산업 투자진출 세미나	2017.4
17-019	Global Project Plaza 2017	2017.4
17-020	중국시장진출의 초석, 홍콩 활용방안 (Hong Kong: Your Gateway to China)	2017.4
17-021	Latin Business Week 중남미 진출전략 설명회	2017.5
17-022	중국 소비재 수출환경 변화 및 진출전략 설명회	2017.6
17-023	우리 수출의 한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KOTRA 창립 55주년 기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2017.6
17-024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8차 수요포럼 : 해외 노후 인프라 개선·해체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7
17-025	2016/17년 산업·무역·투자 KSP 결과공유 세미나	2017.7
17-026	(매칭페어) 제2차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활용 상담회	2017.7
17-027	중국 동북 바이어, 이런 제품 찾는다	2017.8
17-028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2017.9
17-029	Novo Nordisk와 함께하는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 : Global Alliance Project with Novo Nordisk	2017.9
17-030	2017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2017.9
17-031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9차 수요포럼 : 엔지니어링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방안	2017.10
17-032	2017 일반물자 정부간 수출계약제도 활용 세미나	2017.11
17-033	인도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11
17-034	2017 공공조달 플라자 (Public Procurement Plaza 2017)	2017.11
17-035	MDB/Global Development Fund Project Plaza 2017	2017.11
17-036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설명회	2017.11
17-037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30차 수요포럼 : '18년 해외 건설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	2017.11
17-038	중국 환경점검 강화와 우리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2017.11
17-039	2018년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전략 설명회	2017.12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년 대중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	2017.1
17-002	2017 차이나 비즈니스 트렌드	2017.2
17-003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2017.3
17-004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전인대(3/5~15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017.4
17-005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외자기업 진출사례	2017.5
17-006	2017 홍콩 신정부 출범으로 보는 중-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2017.5
17-007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동향과 시사점	2017.5
17-008	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	2017.6
17-009	2017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조사	2017.6
17-010	KOTRA 중국지역 마케터 100인에 물었다	2017.6
17-011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7.7
17-012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2017.8
17-013	중국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2017.10
17-014	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GVC) 변화와 시사점	2017.10

□ GIP (Global Issue Paper)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미국의 對수단 경제제재 해제 및 향후전망	2017.1
17-002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7.2
17-003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중·일 무역·투자 장벽 분석 및 시사점	2017.4
17-004	美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 자동차 업계 동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7.6
17-005	일본-EU EPA 합의의 주요내용, 현지반응 및 영향 :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2017.9
17-006	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후 주요 참여국 동향 및 향후 전망	2017.11

작 성 자

- 리야드무역관 이성길 차장
- 두바이무역관 안 령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7-050

20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부가가치세 도입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전략시장진출지원단
(02-3460-3382)
I S B N | 979-11-6097-469-0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부가가치세 도입

-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